

2022년 제8차 KICCE 정책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 - 고민정 의원실 공동 주최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모색

2022. 12. 6.(화), 14:30~16:30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오펜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국회의원 고민정

Program

육아정책연구소 - 고민정 의원실 제8차 KICCE 정책토론회

: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모색

| 일 시 | 2022. 12. 6. (화), 14:30 ~ 16:30

| 장 소 | 전경련회관 오펜룸(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 일정표 |

구 분		진 행 내 용
사회: 이정림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14:30~14:40	개회 및 인사말	박상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14:40~15:00	발표 1	위탁가정 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배윤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15:00~15:20	발표 2	위탁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 장혜림 교수(서울장신대학교)
15:20~16:20	토론	좌장: 김형모 교수(경기대학교) 강현주 교수(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정선옥 교수(덕성여자대학교) 김아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남궁제정 회장(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협의회)

Contents

Ⅰ 육아정책연구소 - 고민정 의원실 제8차 KICCE 정책토론회

: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모색

| 개회 및 인사말씀 | 1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개회 및 인사말씀 | 2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 발표 1 | 위탁가정 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5

배윤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발표 2 | 위탁부모 힘 기르기 육아지침서의 방향 25

장혜림 교수(서울장신대학교)

| 토론 | 강현주 교수(한국보건복지인재원) 37

정선옥 교수(덕성여자대학교) 41

김아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45

남궁제정 회장(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협의회) 51

개회 및 인사말씀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상희입니다.

오늘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게 되어 기쁘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은 부모의 양육 및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우리나라 아동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1년 12월 기준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9,535명의 보호대상아동이 7,733세대의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 받고 있습니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며 사회적 돌봄이나 교육에 제약이 따르는 재난상황의 경우 자녀 돌봄에 취약한 환경의 가정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돌봄취약·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가정 내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총 5개년도의 연구를 기획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연구과제인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위탁가정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공동주최로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신 고민정 의원님, 발표를 맡아주신 장혜림 교수님, 그리고 좌장 김형모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자로 함께해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위탁가정 지원에 대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향후 좋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

개회 및 인사말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육아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동복지법」과 UN아동권리협약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조치하고, 신속한 가정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가정위탁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저도 가정위탁 아동에게 더욱 안전한 양육환경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제도 마련과 예산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위탁부모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가정위탁 아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노력에도 가정위탁 아동수는 여전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등 해외의 경우 보호대상 아동 10명 중 7~8명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지만, 국내 가정위탁 보호율은 매년 20~3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관련해 불충분한

재원, 시설 위주 보호조치,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위탁부모의 양육역량 지원과 부담 완화 등 위탁가정 지원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배운진 연구위원님, 장혜림 교수님, 좌장을 맡아주신 김형모 교수님 그리고 네 분의 패널분들께서 입법적 보완 방향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새로운 사람입니다.”

즉,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그 투자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국회에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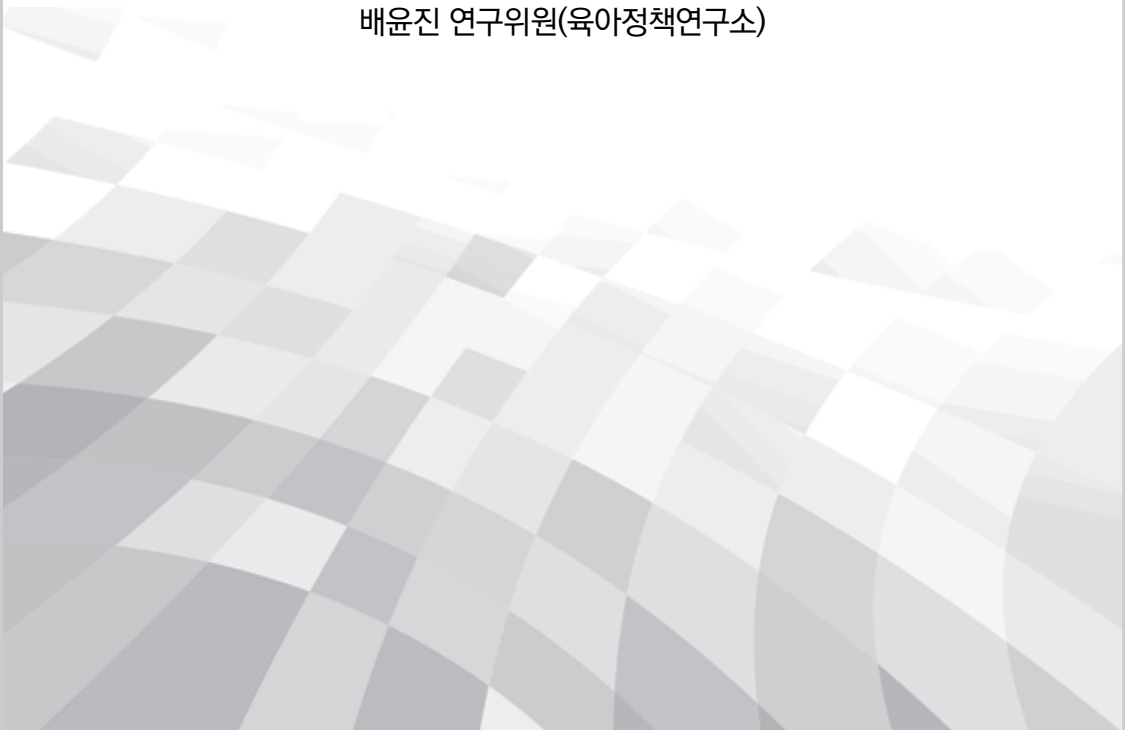
2022년 12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

발표 1

위탁가정 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배윤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발표 1

위탁가정 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¹⁾

배윤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가정 내 양육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기획된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 중 1차년도 연구과제이며, 올해 2022년도 연구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함.
- 위탁아동은 친부모(원가정)로부터의 분리와 양육환경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므로 양육자에 의한 좀 더 세심한 이해와 양육을 필요로 함.
 - 위탁가정에서의 긍정적 양육환경은 위탁아동의 내적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아동의 문제 행동 개선이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이처럼 위탁가정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위탁부모도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특히 학대피해아동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 특별한 요구를 지닌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그 어려움은 더 클 것임.
- 가정위탁을 통해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의 양육역량을 지원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위탁가정의 양육역량 지원을 위해 위탁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실제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가정 지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위탁부모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내용: 위탁부모와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 위탁부모의 자녀양육 특성과 개인 심리적 특성, 아동 특성, 가족관계, 지원 사업 이용 경험 및 요구 등

1) ‘육아정책연구소 2022년도 일반과제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1):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의 발간 예정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하였음.’

□ 비혈연 위탁부모 33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음.

- 면담 내용: 위탁 결정 과정 및 예비위탁부모교육 경험, 위탁 후 자녀양육경험, 위탁가정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 등

3. 설문조사 결과

1)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특성

□ 위탁부모의 행복감, 자아존중감,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은 위탁부모가 조부모인 경우, 그리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낮고 우울 수준은 높게 보고하였음.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유사한 응답을 보임.

〈표 1〉 위탁부모(주양육자) 행복감, 자아존중감, 우울

단위: 점(명)

구분	행복감		자아존중감		우울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76	0.94	3.20	0.39	1.39	0.42	(283)
위탁부모-아동 관계							
조부모	5.07 _c	1.10	2.98 _b	0.42	1.62 _a	0.51	(57)
친인척	5.49 _b	0.98	3.11 _b	0.42	1.43 _b	0.48	(40)
비혈연	6.03 _a	0.74	3.28 _a	0.34	1.31 _b	0.34	(186)
F	29.71***		16.54***		13.0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04 _b	1.12	2.98 _b	0.45	1.66 _a	0.53	(64)
200~400만원 미만	6.01 _a	0.81	3.23 _a	0.35	1.32 _b	0.33	(93)
400~600만원 미만	5.93 _a	0.72	3.27 _a	0.34	1.32 _b	0.36	(85)
600만원 이상	5.98 _a	0.76	3.30 _a	0.33	1.30 _b	0.31	(41)
F	19.51***		10.24***		13.07***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행복감은 7점 척도, 자아존중감 4점 척도, 우울은 4점 척도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위탁부모(주양육자) 현재 건강상태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임	보통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5점 평균	계(수)
전체	1.4	9.5	31.4	44.5	13.1	3.58	100.0(283)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5.3	24.6	36.8	24.6	8.8	3.07 _b	100.0(57)
친인척	2.5	15.0	45.0	30.0	7.5	3.25 _b	100.0(40)
비혈연	0.0	3.8	26.9	53.8	15.6	3.81 _a	100.0(186)
$\chi^2(df)/F$			46.24(8)***			21.31***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임	보통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5점 평균	계(수)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7	21.9	35.9	29.7	7.8	3.14 _b	100.0(64)
200~400만원 미만	1.1	7.5	25.8	48.4	17.2	3.73 _a	100.0(93)
400~600만원 미만	0.0	5.9	30.6	47.1	16.5	3.74 _a	100.0(85)
600만원 이상	0.0	2.4	39.0	53.7	4.9	3.61 _a	100.0(41)
$\chi^2(df)/F$			32.00(12)**			7.62***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 위탁부모가 응답한 위탁아동의 건강상태는 평균 4.15점으로 대체로 건강이 좋은 편으로 응답하였음(5점 척도). 기관 적응의 어려움과 또래관계 어려움 정도는 각 평균 1.85점, 1.84점, 영유아의 경우 위탁부모(주양육자)와의 분리불안으로 인한 어려움은 2.11점, 학령기 위탁아동의 학교공부에 대한 부담은 2.34점으로 응답하였음(4점 척도).

- 위탁가정에 적응하는 기간에 대해, 위탁아동이 영아일 때 적응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가 가장 많아서 어린 연령일수록 위탁가정에 적응이 빨리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음.

〈표 3〉 위탁아동 건강상태 및 행복감

단위: 점(명)

구분	건강상태	행복감	(수)
전체	4.15	5.84	(283)
위탁아동 연령			
영아	4.33 _a	6.30 _a	(57)
유아	4.15 _{ab}	6.04 _{ab}	(75)
초등학생	4.23 _{ab}	5.81 _b	(79)
중·고등	3.92 _b	5.31 _c	(72)
F	3.31*	15.46***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4.25	5.46 _b	(57)
친인척	4.18	5.90 _a	(40)
비혈연	4.11	5.95 _a	(186)
F	0.61	6.2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28	5.48 _c	(64)
200~400만원 미만	4.08	5.75 _{bc}	(93)
400~600만원 미만	4.09	6.02 _{ab}	(85)
600만원 이상	4.22	6.22 _a	(41)
F	1.07	7.04***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위탁부모가 응답하였으며, 건강상태는 5점척도, 행복감은 7점척도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위탁아동 적응 어려움

단위: 점(명)

구분	기관적응 어려움	(수)	또래관계 어려움	(수)	주양육자 분리불안	(수)	학교공부 부담	(수)
전체	1.85	(278)	1.84	(277)	2.11	(130)	2.34	
위탁아동 연령								
영아	1.41 _b	(56)	1.49 _b	(55)	2.09	(56)	-	
유아	1.80 _{ab}	(74)	1.73 _{ab}	(74)	2.12	(74)	-	
초등학생	1.97 _a	(78)	2.00 _a	(78)	-		2.15	(79)
중·고등	2.13 _a	(70)	2.07 _a	(70)	-		2.55	(71)
F/t	7.63***		5.70***		-0.19		-2.72**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1.80	(56)	1.82	(56)	2.00	(25)	2.29	(31)
친인척	1.82	(39)	1.77	(39)	1.94	(17)	2.36	(22)
비혈연	1.87	(183)	1.87	(182)	2.17	(88)	2.35	(97)
F	0.16		0.21		0.60		0.0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83	(64)	1.78	(64)	2.00	(24)	2.33 _b	(40)
200~400만원 미만	1.92	(91)	1.89	(91)	1.95	(38)	2.39 _{ab}	(54)
400~600만원 미만	1.77	(83)	1.79	(82)	2.21	(42)	2.07 _b	(42)
600만원 이상	1.90	(40)	1.95	(40)	2.27	(26)	3.00 _a	(14)
F	0.45		0.45		0.87		3.94**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4점 척도임.

** $p < .01$, *** $p < .001$.

□ 영아인 경우에는 부모의 학대/방임(36.8%)과 미혼모·부/혼외출생(22.8%)으로 현재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비율이 높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보호하는 비율(27.8%)이 높음.

- 한편으로 위탁부모가 조부모이거나 친인척인 경우에는 부모의 이혼으로 현재 위탁아동을 보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비혈연인 경우에는 부모의 학대/방임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2) 자녀양육 및 가족관계 특성

□ 영유아 위탁부모의 경우 양육역량은 5점 척도에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보고하였으나, 양육효능감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학령기 아동 위탁부모의 양육역량은 영유아기 위탁부모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음.

〈표 5〉 영유아 위탁부모의 양육역량

단위: 점(명)

구분	상호작용 역량		인지적 역량		양육효능감		정서적 역량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38	0.48	4.18	0.60	3.75	0.61	4.07	0.46	(132)
위탁아동 연령									
영아	4.41	0.44	4.36	0.50	3.87	0.55	4.09	0.46	(57)
유아	4.35	0.51	4.05	0.63	3.65	0.64	4.05	0.47	(75)
<i>t</i>	0.75		3.03**		2.13*		0.55		
위탁부모-아동 관계									
조부모	4.31	0.51	3.91 _a	0.83	3.63	0.76	3.99	0.55	(26)
친인척	4.38	0.47	4.08 _a	0.74	3.64	0.77	4.17	0.45	(18)
비혈연	4.40	0.48	4.29 _a	0.44	3.80	0.52	4.07	0.44	(88)
<i>F</i>	0.31		4.59*		1.10		0.7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33	0.53	3.93 _a	0.78	3.59	0.82	4.01	0.56	(24)
200~400만원 미만	4.32	0.49	4.08 _a	0.62	3.70	0.54	4.08	0.45	(39)
400~600만원 미만	4.39	0.49	4.33 _a	0.45	3.84	0.55	4.07	0.46	(42)
600만원 이상	4.47	0.41	4.32 _a	0.48	3.80	0.56	4.10	0.42	(27)
<i>F</i>	0.59		3.31*		0.98		0.19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5점 척도임.

* $p < .05$, ** $p < .01$.

〈표 6〉 학령기 아동 위탁부모의 양육역량

단위: 점(명)

구분	상호작용 역량		인지적 역량		양육효능감		정서적 역량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08	0.57	4.04	0.53	3.58	0.61	3.90	0.51	(151)
위탁아동 연령									
초등학교	4.14	0.56	4.11	0.44	3.56	0.59	3.92	0.50	(79)
중·고등	4.00	0.56	3.97	0.61	3.60	0.63	3.88	0.53	(72)
<i>t</i>	1.53		1.54		-0.35		0.50		
위탁부모-아동 관계									
조부모	4.07	0.68	3.87 _a	0.64	3.44	0.84	3.77 _a	0.62	(31)
친인척	3.76	0.52	3.85 _a	0.59	3.43	0.54	3.70 _a	0.47	(22)
비혈연	4.15	0.52	4.14 _a	0.46	3.66	0.53	3.98 _a	0.47	(98)
<i>F</i>	4.36*		4.86**		2.27		3.86*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98	0.66	3.87	0.67	3.49	0.79	3.82	0.62	(40)
200~400만원 미만	4.15	0.47	4.11	0.47	3.65	0.52	3.96	0.44	(54)
400~600만원 미만	4.13	0.57	4.13	0.39	3.66	0.55	3.90	0.51	(43)
600만원 이상	3.93	0.59	4.00	0.65	3.35	0.50	3.87	0.47	(14)
<i>F</i>	0.03		0.78		0.87		0.75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일부 분석에서 $F_{값}$ 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따라 사후검정(Scheffe)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 영아를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육체적 피로, 휴식시간 없음 등의 신체적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위탁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위탁부모가 조부모인 경우,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을 더 높게 보고하였음.

〈표 7〉 위탁아동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부담

단위: 점(명)

구분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어려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18	0.79	2.12	0.75	1.79	0.68	2.22	0.84	1.76	0.67	(283)
위탁아동 연령											
영아	2.28 _a	0.73	1.98	0.77	1.70	0.57	1.86 _c	0.61	1.63	0.62	(57)
유아	2.39 _{ab}	0.82	2.16	0.77	1.83	0.76	2.0 _{bc}	0.84	1.89	0.76	(75)
초등학생	2.14 _{ab}	0.76	2.09	0.72	1.77	0.66	2.35 _{ab}	0.89	1.68	0.59	(79)
중·고등	1.93 _b	0.76	2.21	0.73	1.85	0.69	2.51 _a	0.82	1.82	0.66	(72)
F	4.72**		1.10		0.59		8.72***		2.27		
위탁아동 성별											
남	2.12	0.74	2.07	0.72	1.74	0.64	2.15	0.82	1.75	0.70	(151)
여	2.25	0.83	2.17	0.78	1.85	0.71	2.29	0.86	1.78	0.62	(132)
t	-1.40		-1.22		-1.32		-1.35		-0.40		
위탁부모-아동 관계											
조부모	2.04	0.94	2.07	0.86	1.88	0.83	2.74 _a	0.92	1.86	0.74	(57)
친인척	2.25	0.74	2.25	0.67	1.85	0.74	2.25 _b	0.90	1.90	0.67	(40)
비혈연	2.21	0.74	2.10	0.72	1.75	0.61	2.05 _b	0.74	1.70	0.64	(186)
F	1.27		0.78		0.91		16.21***		2.1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94 _b	0.85	2.05	0.76	1.84	0.76	2.77 _a	0.85	1.81	0.75	(64)
200~400만원 미만	2.17 _{ab}	0.75	2.12	0.69	1.82	0.71	2.13 _a	0.70	1.73	0.57	(93)
400~600만원 미만	2.34 _a	0.76	2.19	0.79	1.73	0.64	2.04 _a	0.85	1.76	0.67	(85)
600만원 이상	2.24 _{ab}	0.73	2.07	0.75	1.78	0.52	1.93 _b	0.75	1.76	0.73	(41)
F	3.41*		0.49		0.41		14.06***		0.19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4점 척도임.

* $p < .05$, ** $p < .01$, *** $p < .001$.

□ 위탁아동 양육 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위탁아동과 가정위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은 위탁아동이 유아인 경우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위탁아동의 자립 준비에 대한 부담'은 위탁아동이 학령기인 경우 더욱 크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위탁아동과 친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은 조부모가 다른 위탁부모들에 비해 더욱 어렵게 느끼고 있었음.

- 조부모와 친인척 위탁부모는 '위탁보호 종료 후 위탁아동의 자립 준비에 대한 부담'을, 비혈연 위탁부모는 '위탁가정이니까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택하였음.

〈표 8〉 위탁아동 양육 시 겪는 어려움-전체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전체	1.79	1.95	2.15	2.44	2.53	2.01	2.19	(283)
위탁아동 연령								
영아	1.71	1.70 _b	1.95	2.09 _b	2.45	1.89	2.27	(57)
유아	1.87	2.16 _a	2.33	2.33 _{ab}	2.53	2.07	2.11	(75)
초등학생	1.71	1.96 _{ab}	2.10	2.57 _a	2.63	2.00	2.35	(79)
중·고등	1.86	1.90 _{ab}	2.18	2.68 _a	2.50	2.07	2.04	(72)
F	0.92	3.62*	1.92	4.94**	0.43	0.57	1.85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1.68	2.00	2.34 _a	2.71	2.61	2.21	2.04	(57)
친인척	1.80	1.75	1.80 _b	2.35	2.35	1.85	2.03	(40)
비혈연	1.82	1.97	2.17 _{ab}	2.38	2.55	1.99	2.27	(186)
F	0.75	1.37	4.01*	2.88	0.91	2.34	2.3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73	2.00	2.36	2.78 _a	2.67	2.08	2.02	(64)
200~400만원 미만	1.78	1.86	2.04	2.32 _a	2.36	1.92	2.15	(93)
400~600만원 미만	1.82	1.93	2.16	2.38 _a	2.52	2.02	2.25	(85)
600만원 이상	1.83	2.10	2.05	2.32 _a	2.73	2.10	2.43	(41)
F	0.20	0.92	1.61	3.63*	2.04	0.58	1.94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① OO의 문제행동이 위탁 때문인 것 같아 걱정, ② OO와 가정위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 ③ OO와 OO의친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 ④ 위탁보호 종료 후 OO의 자립 준비에 대한 부담, ⑤ 위탁가정이니까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 ⑥ 주변 사람들과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어려움, ⑦ 위탁에 대한 편견이나 주변의 오해

3) 4점 척도임.

* $p < .05$, ** $p < .01$

〈표 9〉 위탁아동 양육 시 겪는 어려움-친인척, 비혈연 위탁가정

단위: 점(명)

구분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수)
전체	1.37	1.31	1.36	1.36	1.73	1.28	2.48	2.24	2.17	(177)
위탁아동 연령										
영아	1.14 _b	1.14 _b	1.14 _a	1.35	1.73	1.10 _a	2.63	2.51 _{ab}	2.41 _{ab}	(49)
유아	1.37 _{ab}	1.34 _{ab}	1.43 _a	1.33	1.63	1.33 _a	2.43	2.57 _a	2.53 _a	(47)
초등학생	1.43 _{ab}	1.30 _{ab}	1.41 _a	1.38	1.76	1.37 _a	2.52	1.93 _{bc}	1.86 _{bc}	(44)
중·고등	1.49 _a	1.44 _a	1.44 _a	1.39	1.78	1.30 _a	2.37	1.84 _c	1.76 _c	(37)
F	3.30*	2.73*	3.14*	0.11	0.32	2.78*	0.58	5.78***	6.67***	
위탁아동 관계										
친인척	1.42	1.32	1.45	1.29	1.58	1.32	2.00	1.90	1.90	(31)
비혈연	1.36	1.31	1.34	1.38	1.76	1.27	2.59	2.32	2.23	(146)
t	0.37	0.04	-1.01	-0.7	-1.34	-0.2	9.45**	-3.72	-2.5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45	1.41	1.50	1.32	1.59	1.32	2.36	2.21	2.05	(19)
200~400만원 미만	1.40	1.31	1.35	1.40	1.71	1.31	2.39	2.10	2.06	(62)
400~600만원 미만	1.31	1.27	1.37	1.34	1.69	1.25	2.62	2.19	2.19	(68)
600만원 이상	1.37	1.34	1.29	1.37	1.94	1.26	2.45	2.71	2.43	(28)
F	0.42	0.49	0.65	0.19	0.96	0.24	0.74	2.22	0.89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정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2) ⑧ OO가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⑨ 가족들이 OO와 가까워지지 못함, ⑩ OO와 애착 형성이 어려움, ⑪ 친자녀와 OO를 (역) 차별하게 됨, ⑫ OO를 신경쓰느라 친자녀에게 미안함, ⑬ 친자녀와 OO이 사이가 좋지 않음, ⑭ 위탁보호 종료에 대한 서운함, ⑮ OO에게 언제 어떻게 위탁사실을 이야기할지에 대한 고민, ⑯ OO가 위탁사실로 비뚤어질까봐 두려움

3) 4점 척도임.

* $p < .05$, *** $p < .001$.

〈표 10〉 위탁아동 양육 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계(수)
전체	3.2	2.1	8.8	17.3	15.2	2.1	9.2	-	-	1.8	0.7	3.2	-	4.2	8.5	4.2	100.0(283)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1.8	1.8	8.8	26.3	19.3	5.3	1.8	-	-	0.0	0.0	1.8	-	0.0	5.3	7.0	100.0(57)
친인척	5.0	5.0	2.5	40.0	12.5	2.5	10.0	-	-	0.0	0.0	5.0	-	0.0	5.0	5.0	100.0(40)
비혈연	3.2	1.6	10.2	9.7	14.5	1.1	11.3	-	-	2.7	1.1	3.2	-	6.5	10.2	3.2	100.0(186)
$\chi^2(df)$	60.20(30)***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정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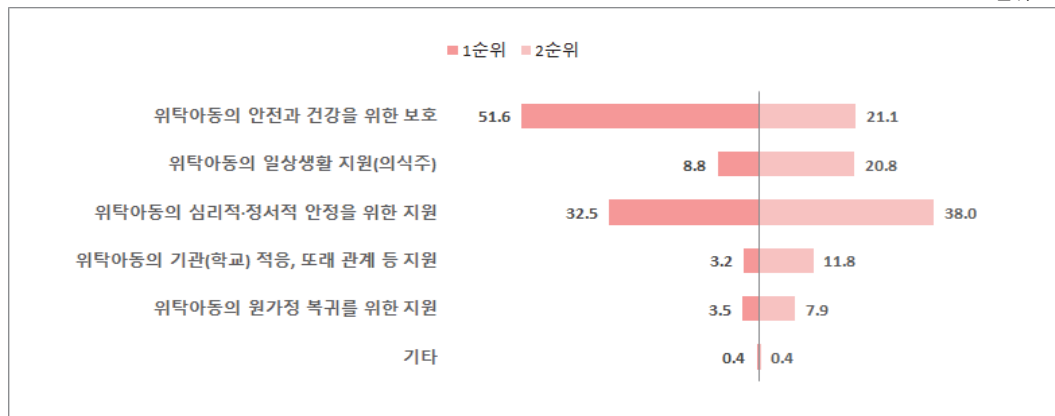
- 2) ① OO의 문제행동이 위탁 때문인 것 같아 걱정이 됨, ② OO와 가정위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미안함, 어색함 등), ③ OO와 OO의 친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 ④ 위탁보호 종료 후 OO의 자립 준비에 대한 부담, ⑤ 위탁가정이니까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 ⑥ 주변사람들과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어려움, ⑦ 위탁에 대한 편견이나 주변의 오해, ⑧ OO가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⑨ 가족들이 OO와 가까워지지 못함, ⑩ OO와 애착 형성이 어려움, ⑪ 친자녀와 OO를 (역)차별하게 됨, ⑫ OO를 신경 쓰느라 친자녀에게 미안함, ⑬ 친자녀와 OO이 사이가 좋지 않음, ⑭ 위탁보호 종료에 대한 서운함, ⑮ (OO이 위탁사실을 모르는 경우) OO에게 언제, 어떻게 위탁사실을 이야기할지에 대한 고민, ⑯ (OO이 위탁사실을 모르는 경우) OO가 위탁사실로 비뚤어질까봐 두려움

*** $p < .001$.

□ 위탁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위탁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호'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51.6%), 다음으로 '위탁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32.5%가 응답하였음.

[그림 1] 위탁부모가 생각하는 위탁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1+2순위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정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친부모(친권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친부모와 연락을 하고 있는 경우보다 친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음.

- 특히 위탁아동이 영아인 경우에는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 위탁아동의 친부모 만남 시 지원 방법으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주선해주는 경우가 3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접 친권자에게 연락 23.9%,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음 24.7%, 위탁아동이 친권자에게 연락 7.3% 순이었음.

〈표 11〉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친부모(친권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단위: %(명)

구분	근황도 알고, 연락도 하고 있음	근황은 알지만 연락하지 않음	근황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음	기타 (사망 등)	계(수)
전체	30.0	30.4	37.8	1.8	100.0(283)
위탁아동 연령					
영아	19.3	36.8	42.1	1.8	100.0(57)
유아	34.7	26.7	38.7	0.0	100.0(75)
초등학생	32.9	30.4	34.2	2.5	100.0(79)
중·고등	30.6	29.2	37.5	2.8	100.0(72)
$\chi^2(df)$	6.68(9)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40.4	19.3	38.6	1.8	100.0(57)
친인척	45.0	30.0	25.0	0.0	100.0(40)
비혈연	23.7	33.9	40.3	2.2	100.0(186)
$\chi^2(df)$	4.15(3)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표 12〉 위탁아동이 친부모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단위: %(명)

구분	근황도 알고, 연락도 하고 있음	근황은 알지만 연락하지 않음	근황도 모르고 연락도 하지 않음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있음	계(수)
전체	28.8	13.9	34.3	23.0	100.0(274)
위탁아동 연령					
영아	16.1	5.4	23.2	55.4	100.0(56)
유아	28.8	12.3	31.5	27.4	100.0(73)
초등학생	33.8	15.6	40.3	10.4	100.0(77)
중·고등	33.8	20.6	39.7	5.9	100.0(68)
$\chi^2(df)$	53.48(9)***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40.0	14.5	34.5	10.9	100.0(55)
친인척	35.9	25.6	25.6	12.8	100.0(39)
비혈연	23.9	11.1	36.1	28.9	100.0(180)
$\chi^2(df)$	18.61(6)**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표 13〉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만남 시 지원 방법

단위: %(명)

구분	직접 친권자에게 연락	위탁아동이 친권자에게 연락	가정위탁지원 센터에서 주선	별도의 노력 하지 않음	기타	계(수)
전체	23.9	7.3	30.4	24.7	13.8	100.0(247)
위탁아동 연령						
영아	16.7	0.0	44.4	18.5	20.4	100.0(54)
유아	31.3	1.6	40.6	17.2	9.4	100.0(64)
초등학생	19.4	11.9	26.9	31.3	10.4	100.0(67)
중·고등	27.4	14.5	11.3	30.6	16.1	100.0(62)
$\chi^2(df)$	37.99(12)***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38.8	10.2	6.1	32.7	12.2	100.0(49)
친인척	36.4	15.2	3.0	39.4	6.1	100.0(33)
비혈연	17.0	4.8	43.0	19.4	15.8	100.0(165)
$\chi^2(df)$	56.76(8)***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01$.

〈표 14〉 위탁아동 친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단위: 점(명)

구분	위탁아동이 친부모를 원망함		위탁아동이 친부모를 그리워함		친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연락이 잘 안됨		친부모가 과도한 요구를 함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1.62	(252)	1.93	(251)	2.15	(247)	1.39	(245)
위탁아동 연령								
영아	1.15 _b	(47)	1.45 _b	(47)	1.89	(47)	1.24	(46)
유아	1.41 _b	(69)	1.93 _a	(69)	2.06	(69)	1.32	(68)
초등학생	1.81 _a	(69)	2.23 _a	(70)	2.34	(67)	1.45	(67)
중·고등	1.99 _a	(67)	1.97 _a	(65)	2.25	(64)	1.50	(64)
F	15.44***		7.81***		1.77		1.75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1.83	(54)	2.26 _a	(54)	2.43	(54)	1.43	(54)
친인척	1.64	(36)	2.11 _{ab}	(35)	2.15	(34)	1.41	(34)
비혈연	1.55	(162)	1.78 _b	(162)	2.06	(159)	1.37	(157)
F	2.62		6.87**		2.07		0.17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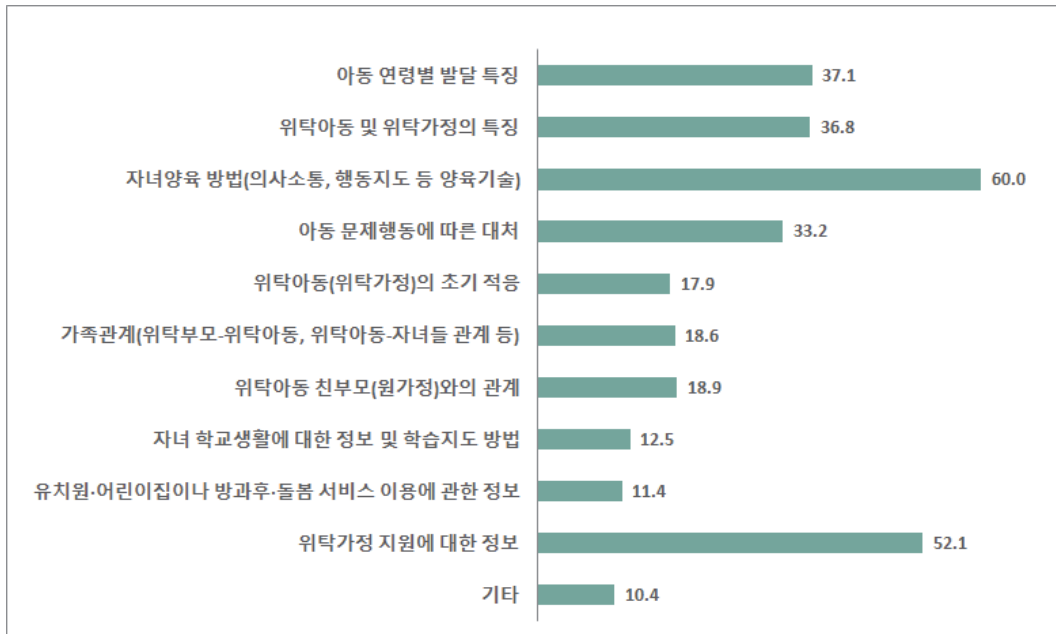
** $p < .01$, *** $p < .001$.

3) 부모교육 및 정책지원

□ 위탁부모들이 가장 최근 참여한 예비위탁부모교육 혹은 보수교육의 내용으로는 자녀양육 방법(60.0%), 위탁가정 지원에 대한 정보(52.1%),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37.1%), 위탁 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징(36.8%),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33.2%) 등이 있었음.

[그림 2] 부모교육-최근 참여한 교육의 내용

단위: %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중복응답임.

□ 이상의 부모교육이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8.8%는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34.7%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표 15〉 부모교육-실제 자녀양육 시 도움 정도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도움이 안됨	대체로 도움이 안됨	대체로 도움됨	매우 도움됨	4점 평균	계(수)
전체	1.8	4.7	58.8	34.7	3.26	100.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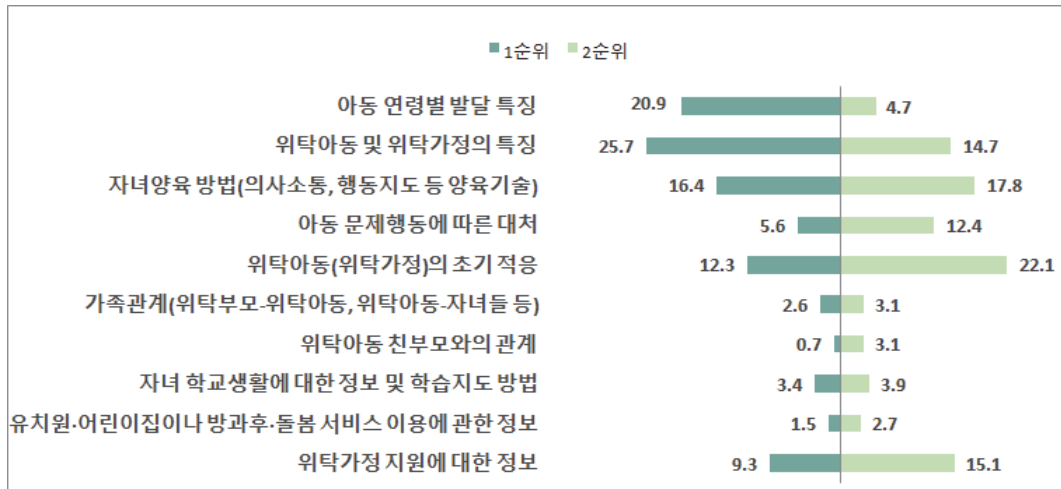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예비위탁부모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는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징(25.7%),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20.9%), 자녀양육 방법(16.4%), 위탁아동의 초기 적응(12.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보수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자녀양육 방법(28.3%), 아동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 (21.0%), 아동 연령별 발달 특징(12.1%) 등의 순으로 꼽아서, 예비교육과는 다른 결과를 보임.

[그림 3] 예비위탁부모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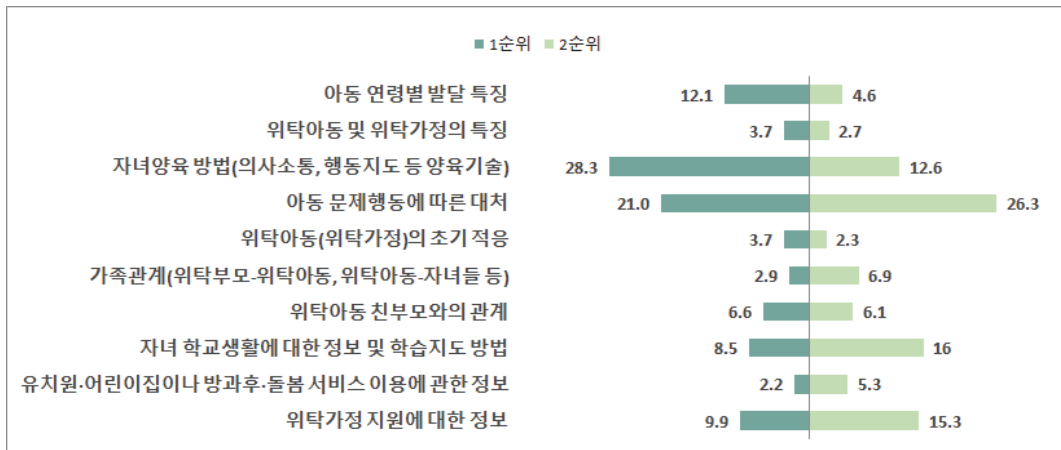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4] 위탁부모 보수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 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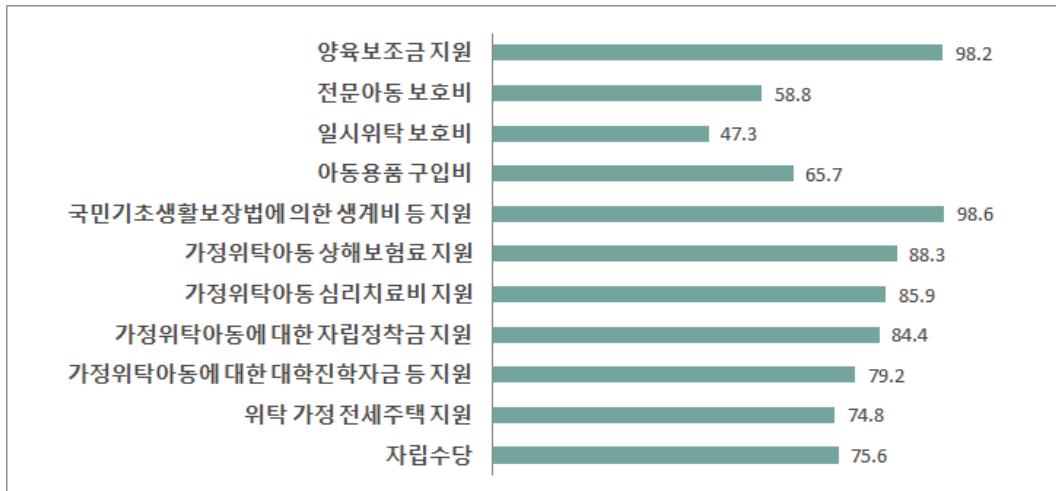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현행 위탁가정 지원제도의 인지여부, 필요성, 수혜경험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도에 대해 평균 3.66점 이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4점 척도).

- 지원받은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진학자금 등의 지원(3.29점), 심리치료비 지원(3.27점), 아동용품 구입비(3.24점), 상해보험료 지원(3.23점), 생계비 지원(3.21점) 등의 순으로 평가하였음.

[그림 5] 위탁가정 지원제도의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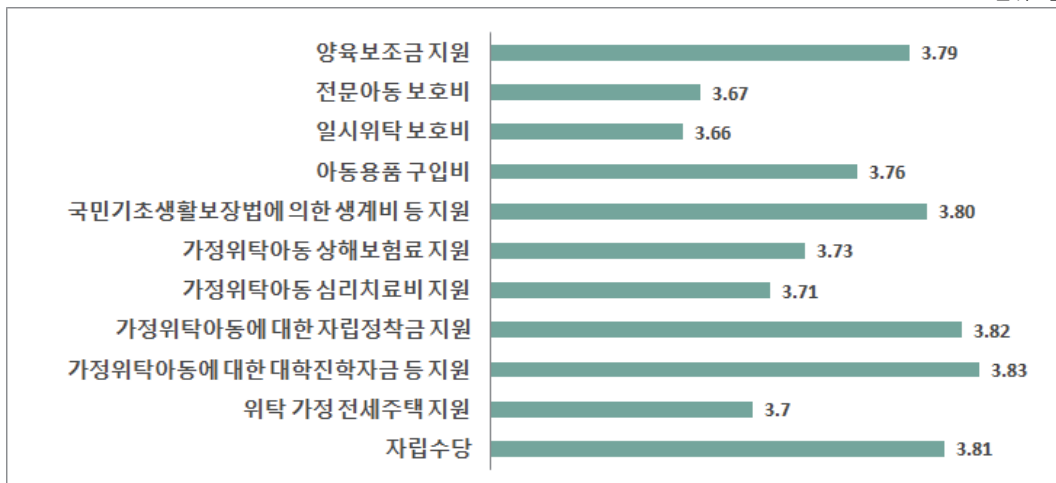
단위: %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6] 위탁가정 지원제도의 필요성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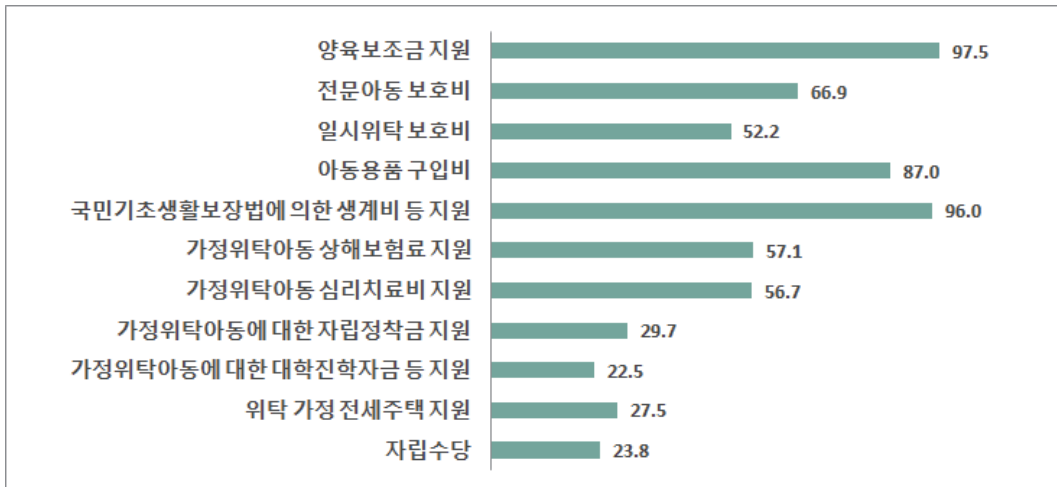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필요성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4점 척도임.

[그림 7] 위탁가정 지원제도 수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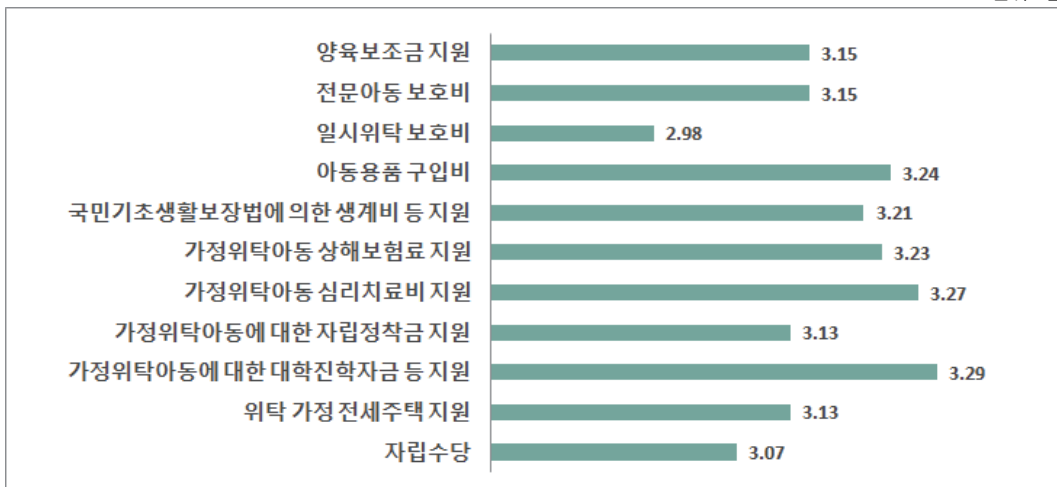
단위: %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정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임.

[그림 8] 위탁가정 지원제도 수혜 경험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정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지원제도를 알고 있고,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만족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4점 척도임.

□ 자조모임 등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한 경우,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는 모두 3.1점 이상으로 도움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음(4점 척도).

- 그 중 자녀양육정보 교류 모임(3.46점), 아동발달·학습 지원 프로그램(3.45점), 아동상담·심리치료(3.44점) 등의 순으로 도움 정도를 높게 응답하였음.

〈표 16〉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대상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도움 정도

단위: %, 점(명)

구분	경험 여부	도움 정도					4점 평균	계(수)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됨	도움됨	매우 도움됨			
인터넷사이트 활동	26.7	2.6	13.2	52.6	31.6		3.13	100.0(76)
친목도모 모임	45.2	-	5.6	48.4	46.0		3.40	100.0(126)
자녀양육정보 교류	54.4	1.3	0.7	48.4	49.7		3.46	100.0(153)
아동발달·학습 지원	35.7	2.0	2.0	44.4	51.5		3.45	100.0(99)
부모상담·심리치료	25.8	4.1	4.1	38.4	53.4		3.41	100.0(73)
아동상담·심리치료	41.7	-	7.7	40.2	52.1		3.44	100.0(117)
위탁가정 대상 행사	52.5	0.7	2.7	41.8	54.8		3.51	100.0(146)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현재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으로 선임 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9.98개월로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었음.

- 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79.9%가 법정대리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권한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통장 등 금융계좌 개설'(45.3%),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33.5%) 등이 있었음.

〈표 17〉 위탁아동 보호 시 법정대리인 권한이 필요한 부분: 1순위

단위: %(명)

구분	통장 등 금융계좌 개설	휴대폰 등 이동통신서비스 개통 및 이용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계(수)
전체	45.3	8.6	33.5	9.4	3.2	100.0(278)
위탁아동 연령						
영아	33.9	5.4	41.1	14.3	5.4	100.0(56)
유아	43.2	2.7	43.2	5.4	5.4	100.0(74)
초등학생	47.4	15.4	24.4	10.3	2.6	100.0(78)
중·고등	54.3	10.0	27.1	8.6	0.0	100.0(70)
$\chi^2(df)$			23.86(12)*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52.7	7.3	34.5	1.8	3.6	100.0(55)
친인척	55.3	2.6	34.2	7.9	0.0	100.0(38)
비혈연	41.1	10.3	33.0	11.9	3.8	100.0(185)
$\chi^2(df)$			13.98(8)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위탁아동 보호 중 입양에 대해 생각만 해보았다 35.9%, 입양은 전혀 생각하지 않음 32.0%, 가정위탁을 하면서 입양을 희망하게 되었음 15.7%, 추후 입양을 희망하여 가정위탁을 하고 있음 13.9%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18〉 위탁아동 보호 시 입양 고려 유무

단위: %(명)

구분	입양 전혀 생각하지 않음	입양에 대해 생각만 해봄	가정위탁 중 입양 희망	추후 입양 희망하여 가정위탁 시작	기타	계(수)
전체	32.0	35.9	15.7	13.9	2.5	100.0 (281)
위탁아동 연령						
영아	19.3	43.9	19.3	17.5	0.0	100.0 (57)
유아	29.3	36.0	16.0	17.3	1.3	100.0 (75)
초등학생	32.9	35.4	8.9	15.2	7.6	100.0 (79)
중·고등	44.3	30.0	20.0	5.7	0.0	100.0 (70)
$\chi^2(df)$			28.19(12)**			
위탁아동 관계						
조부모	71.9	17.5	3.5	7.0	0.0	100.0 (57)
친인척	48.7	33.3	10.3	7.7	0.0	100.0 (39)
비혈연	16.2	42.2	20.5	17.3	3.8	100.0 (185)
$\chi^2(df)$			72.24(8)***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8.8	23.4	4.7	3.1	0.0	100.0 (64)
200~400만원 미만	23.7	38.7	19.4	15.1	3.2	100.0 (93)
400~600만원 미만	21.4	40.5	15.5	19.0	3.6	100.0 (84)
600만원 이상	15.0	40.0	25.0	17.5	2.5	100.0 (40)
$\chi^2(df)$			57.18(12)***			

주: 본 연구를 위한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4. 위탁부모 면담 결과

1) 위탁가정 부모의 양육경험 및 지원 요구

□ 위탁 결정 및 준비과정

- 위탁 결정의 동기로는 직업, 입양 경험, 아동 관련 사건 등이 있었으며, 위탁부모들은 위탁 결정에 있어 관련 기관의 홍보 및 미디어의 영향력을 강조함.
- 위탁가정 부모 양성교육에서 기존 위탁가정의 사례 공유가 큰 도움이 됨. 한편 현행 양성 교육은 위탁아동의 연령에 맞춘 구체적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위탁아동에 대한 개별 정보가 부족하여 양육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 위탁 후 자녀양육

- 아동이 위탁가정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주요한 요인은 위탁 시점의 아동 연령임.
- 위탁 후에는 위탁아동 뿐 아니라 위탁가정 구성원들도 상호 적응하는 과정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점차 안정이 되면 가족원들이 위탁아동을

구심점으로 응집하고, 긍정적인 가족 상호작용도 증가하게 됨.

- 위탁아동 원가족과의 관계가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양가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

□ 위탁가정 지원을 위한 요구

- 위탁부모의 법적 역할수행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큼.
- 연구에 참여한 위탁가정 부모 대부분은 행정 실무자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토로하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를 표시함. 특히 위탁가정에 대한 서비스나 급여 처리의 비일관성이나 담당자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하였음.
- 양육보조금 및 관련 급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존하며, 각 보조금 지급 기준도 권고 사항에 불과하여 불안정성이 높은 편임.
- 위탁을 준비하는 과정의 양성교육과 이후 보수교육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아동의 발달단계를 구체화하고, 각 단계에 적합한 양육 지식 및 기술이 보완되어야함을 요구하였음.
 - 특히 위탁시점의 아동 연령에 따라 위탁아동의 적응 과정과 위탁가정이 대비해야할 준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교육내용에 반영해야 함.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위탁부모를 위한 자조모임의 활성화, 전문적 양육코칭 지원도 요구됨.

5. 결론 및 제언

□ 위탁가정 양육역량 강화 방안

- 위탁부모 심리적 건강 지원 강화
- 개별 위탁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 부모교육의 내용체계 마련
- 자조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 물리적 환경 지원
- 양육지침서 활용

□ 위탁가정 지원체계 개선 방안

- 육아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위탁아동 심리치료 확대
- 장애아동 특성 고려한 다양한 지원 마련
-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협력
- 장/단기 가정위탁 구분 및 정책 이원화
- 가정위탁 종결 과정의 개선
- 위탁가정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개선
- 행정적 지원의 일관성 및 예산지원의 안정성 확보
-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 가정위탁제도 내실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 위탁부모 정의규정 마련 및 자격 법제화
- 위탁부모 양성교육 내용의 법제화
- 장기 위탁아동 보호·양육을 위한 제도 개선
-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 내용 마련
- 위탁부모의 후견권 강화

발표 2

위탁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

장혜림 교수(서울장신대학교)



발표 2

위탁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

장혜림 교수(서울장신대학교)

위탁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

서울장신대학교 장혜림

『위탁부모의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 소개

◆ 기존 지침서와의 차별성

- 현재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과 훈련은 대부분 양육에 필요한 방법과 기술에 초점.
즉, **위탁부모의 권리와 정체성에 초점을 둔 지침서는 부재함.**
- 위탁의 전 과정에서 위탁부모가 겪는 내적 및 외적 자원의 부재는 아동양육에 부정적 영향.
이는 장기적으로 위탁제도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부모의 권리와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차별화된 육아지침서가 필요함.

지침서의 목적 및 대상

◆ 목적

- 위탁의 전 과정과 다양한 상황에 초점을 두고 위탁부모로서 성장과 역량강화 지원.
- 양육 기술 습득 및 아동 권리에 초점을 둔 기존 부모교육 지침서와 달리,
위탁부모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위탁부모의 권리보장까지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



궁극적으로 위탁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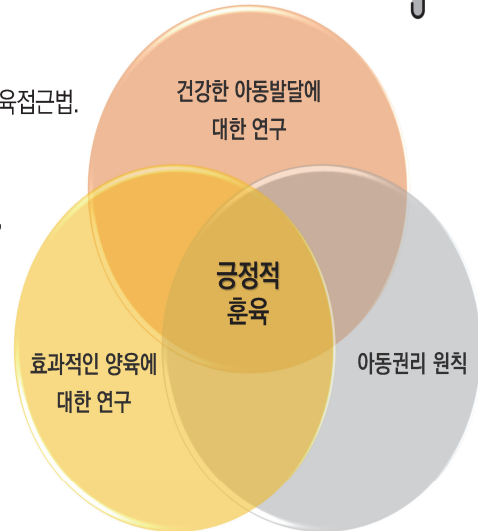
가정위탁유형(일반가정위탁과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에
구분 두지 않고 **공통으로 해당**하는 육아 관련 지침 제공

지침서의 이론적 근거



① 긍정적 훈육

- 아동발달원리를 기반으로 아동을 존중하는 비폭력적인 양육접근법.
아동권리 보장과 이해에 근간.
-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원칙으로 구성,
주양육자가 양육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제안.
- 주요 원칙:
 - ✓ 장기적인 목표
 - ✓ 따뜻함과 구조화
 - ✓ 아동 발달단계 별 특징 및 욕구 이해
 - ✓ 문제 해결



지침서의 이론적 근거



② 강점 관점

- 당사자의 타고난 잠재력과 가능성, 자원을 인정.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과 역량 강화 중심.
- 당사자를 자신이 처한 상황의 전문가로 보는 것 등이 주요 실천원칙.
- 강점관점 기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자원과 재능, 성취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장려.
작은 변화들을 바탕으로 **부모의 역량과 양육효능감을 증진하여 결과적으로 가족관계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



도전과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는 위탁가정의 부모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작용.

육아지침서에 **숨긴** 개념

아동권리, 문제행동,
전문위탁가정의 학대피해아동,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운 아동에 대한 이해

육아지침서에 **드러난** 개념

부모권리, 강점관점,
긍정적 훈육, 육아 힘 키우기,
모든 가정위탁유형에서 필요한 아동에 대한 이해

국내외 위탁부모 교육 현황



한국

- 교육대상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양육취약계층
- 발행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주요내용 : 가정위탁보호제도 관련 사항, 위탁부모의 역할,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 특수육구 이해 및 대처기술, 위탁아동 양육코칭

미국

- 교육대상 : 예비 위탁가정 및 위탁가정
- 발행기관 : 각 주(州) 정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 주요내용 : 예비 위탁부모 사전 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가정/부모/아동 대상 지원, 위탁아동의 건강 및 학업, 행동관리, 위탁가정 관리팀과의 협업, 위탁부모의 스트레스 관리 및 휴식지원, 위탁가정의 중단/종결 과정

영국

- 교육대상 : 예비 위탁가정 및 위탁가정
- 발행기관 : 가정위탁기관
- 주요내용 : 위탁가정의 유형, 위탁가정 승인 절차,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애착에 대한 이해, 위탁과정에서의 기록, 위탁가정 지원 사항

『위탁부모의 힘 키우기』 내용

긍정적 훈육 + 강점관점

나를 알아가기 (자기 이해)

1. 자기 이해
2. 위탁부모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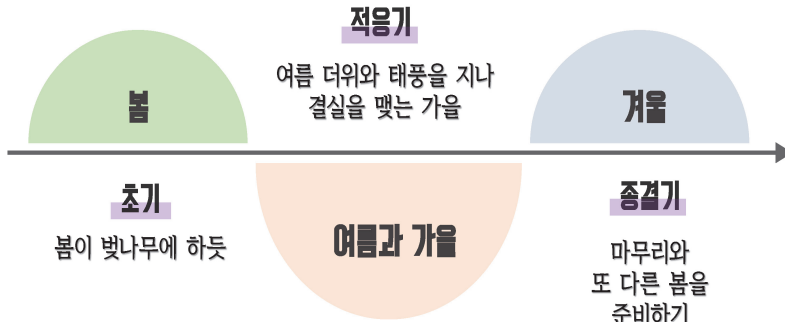
나를 만들어가기 (양육 기술)

1. 교육과 연습
2. 자원활용

나를 세워가기 (정체성)

1. 자기 돌봄
2. 위탁부모 역할 찾기

『위탁부모의 힘 키우기』 구성



『위탁부모의 힘 키우기』 초기 1. 위탁부모 되어가기

① 위탁부모 정체성 형성하기

• 위탁부모의 역할 :

형성자

학습자

자기돌봄자

• 위탁부모의 자기이해 :



나는 어떤 위탁부모가 되고 싶은가?
나는 나를 얼마나 아는가?



「얼마 마음 설명서」 「마음 챙김의 시」
「세상의 모든 엄마는 예쁘다」

② 위탁부모 육아토대 형성하기

• 긍정적 훈육에 대해 이해하기 :

아동발달원리 기반 문제해결, 구조화 제공
장기적인 목표 세우기, 아동 관점 고려하기

• 강점관점에 대해 이해하기 :

잠재력·가능성 인정하기, 강점을 발휘할 기회 제공하기
강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자원 형성하기

• 신뢰 관계 맺기 :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간 신뢰란? 신뢰형성의 목적과 그 중요성이란?
신뢰형성을 위해 부모로서 구조화를 제공하고 긍정적 본보기 되기

APPLY

아동 관점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 구하기

『위탁부모의 힘 키우기』 초기 1. 위탁부모 되어가기

③ 위탁부모의 권리 찾기



• 위탁부모의 권리를 알고 자기 옹호하기 :

- ✓ 위탁아동의 배치를 수락/거부할 권리
- ✓ 위탁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
- ✓ 위탁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위탁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권리
- ✓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탁아동 친가족 방문
- ✓ 위탁아동의 욕구충족을 위한 적절한 자원을 찾을 권리
- ✓ 기관과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적절한 이의제기 절차를 알 권리

• 위탁부모의 책임 :

아동에 대한 보살핌, 건강, 감독, 훈육 등
친가족 재결합을 위한 아동의 원가족과 협력

• 위탁부모 한 팀 만들기 :

위탁부모 간 의견 일치
위탁부모와 실무자 간 의견 일치



위탁부모 지원체계 :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가정위탁센터 등

『위탁부모의 힘 키우기』 초기 2. 위탁아동과 만남

① 아동과 초기관계 형성하기

〈애착관계 형성하기〉



혼자 잠들기, 음식 편식,
발달 상 퇴행 등에서
애착 형성하기

〈규칙 정하기〉

기존의 규칙 알려주되
대화를 통해 설득 · 조정하기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체벌하지 않기
아동의 생각을 존중하기
아동과 의견이 다를 경우
위탁부모의 의견 제안하기

〈아동을 이해하기〉

연령별 발달단계의 특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하기
아이기질에 따라 다른
육아방식 인지하기



「엄마는 너를 사랑해」
「진정한 일곱 살」
「쿠기 한 입의 인생수업」

「왜 마음대로 하면 안돼요?」
「하마의 하루」
「규칙이 필요해!」

「말들이 사는 나라」
「나는 자라요」
「싸워도 돼요?」

「엄마의 첫 공부저자」
「완벽한 아이 팔아요」

② 아동과 가족관계 형성하기 위탁가정 소개문장 / 친가족과 관련한 위탁아동의 정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
(위탁가정) 소개하기



「모든 가족은 특별해요」
「천사를 만나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위탁부모의 힘 키우기』 적응기 1. 성장한다는 증거 찾기

- ① 영유아기 자녀의 성장증거 찾기 : 떼 쓰기, 자립 욕구, 혼자 잠들기 두려움, 호기심 등
- ② 아동기 자녀의 성장증거 찾기 : 반항하기, 공격적인 태도, 위축된 모습 등
- ③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증거 찾기 : 가족으로부터 분리 욕구, 또래 욕구 등



자녀 관점에서 생각하고 공감하기



〈동화 보기엔 너무 커버리〉, 〈별새〉

④ 위탁부모가 잘 성장한다는 증거 찾기 :

스트레스를 조절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찾기
원하는 위탁부모의 모습 찾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칭찬하기



성장일기, 레벨업 척도,
아동에게 쓰는 편지



「이 세상 모든 엄마와 딸 사이」
「누구의 인정도 아닌」

『위탁부모의 힘 키우기』 적응기



2. 넘어진 아동과 같이 일어서기

① 해님과 바람

- ✓ 학대·방임 또는 여러 위탁가정을 경험한 아동은 또래와 다른 행동 양상을 보임
- ✓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숨은 메시지를 파악하여 밀당 중단하기
- ✓ 위탁부모의 역할은 바람이 아닌 해님
- ✓ 위탁부모 혼자 해결하기보다 '한 팀'을 활용하기

②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 정보 알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내 가족센터

3.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① 우리 아이가 또래와 달라요. (발달장애 등)



② 다름을 확인하면 빠른 개입이 필요해요.



성장일기, 레벨업 척도,
아동에게 쓰는 편지



「이 세상 모든 엄마와 딸 사이」
「누구의 인정도 아닌」

『위탁부모의 힘 키우기』 종결기



1. 헤어짐을 준비하기

◆ 마음 돌보기



위탁부모의 **마음** 살피기 :

후련함, 자부심, 감사, 불안, 미안함



위탁아동과 **자립의 의미** 나누기 :

돌봄의 종결을 알리기, 자원 연계, 관계 유지



중도 종결과 관련한 감정 다루기, **위로와 회복** :

중도 종결의 이유 성찰하기 / 심신 회복 방법 찾기

2. 네가 날고 싶을 때를 위해

◆ 위탁아동이 자립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정부지원 정보〉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취업 또는 학업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힘이 나는 관계 만들기〉

자립지원전담기관
바람개비 서포터즈
위탁부모와 연락하기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및 자립지원업무 체계화.
자립정착 의무교육, 사례관리,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등을 지원.

감사합니다

토론

강현주 교수(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정선욱 교수(덕성여자대학교)

김아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남궁제정 회장(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협의회)

토론문

강현주 교수(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정부가 2020년부터 ‘아동보호의 공공화’와 함께 ‘가정형 보호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설형 보호의 비중이 높고 가정위탁제도의 성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의성있게 중요한 정보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15조에는 지자체장이 해야 할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에는 친족보호와 일반가정 위탁이 적시되어 있고 지침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보호 보다 우선시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설형 보호가 우선시 되고 가정위탁 보호가 되는 경우에도 비혈연 가정 위탁인 일반위탁, 전문위탁, 일시위탁 등은 현저히 부진한 상태임
 -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장애아동, 유기아동 등 개별화된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정위탁 양육의 필요성은 증가함.
- 보호대상아동인 위탁아동에만 집중되었던 관심을 위탁부모의 지원에도 주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환기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음
 -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이들에게 어떻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위탁가정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심리특성과 발달, 사례관리, 자립지원 등 아동의 관점에서 이들을 지원하는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왔음.
 - 그러나 본 연구는 위탁부모의 입장에서 양육자로서의 경험과 역할(인식) 그리고 위탁가정을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관심을 전환시켰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음.
 - 사실 위탁부모의 역량강화와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이 필요하며 이것이 위탁아동의 양육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은 이미 다수 있음.
- 가정위탁 부진의 원인으로 위탁가정 ‘발굴 및 매칭’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고 이것은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 2021년 즉각분리제 도입과 함께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 시작되어 전문위탁부모 모집을 위해 노력하고 표준화된 양성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필수교육 참여 후 실제 위탁아동 매칭까지 이루어지는 비율은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임(아동권리보장원, 2021, 내부

자료). 이는 양육에 대한 두려움, 위탁아동 양육과정에서 겪는 여러가지 현실적 문제(사회적 지지 부족,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등) 등에 대한 걱정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해외 가정위탁 관련 연구에서는 돌봄의 어려움이 큰 아동이어도 위탁부모의 준비(가족구성원 전체)와 교육이 충분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위탁 중도포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가정위탁 연구에서는 내·외부적인 지지(가족이나 주변인의 지지 및 관계),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지원이 위탁양육의 시작과 유지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요컨대 가정위탁에 대한 사전준비와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위탁가정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탁가정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시사하고 있음

- 위탁아동 양육시 겪는 어려움이 위탁아동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고 위탁부모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달라짐. 또한 둘 간의 조합에 따라서도 문제나 대응도 달라져야 함. 가령, 영아를 위탁 양육하는 경우 육체피로나 휴식부족이 주호소 문제이며, 친인척 위탁의 경우 위탁아동 자립 준비에 대한 부담이 크고, 비혈연 위탁의 경우 위탁아동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 위탁가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수용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배운진, 발표자료)
- 위탁부모가 생각하는 위탁부모의 가장 큰 역할로 위탁아동의 안전과 건강, 심리정서적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고 학교적응, 또래관계, 원가정복귀 등을 위한 노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는 위탁양육이라는 이슈 자체에 머물러 있는 수준으로 위탁아동 양육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함(배운진, 발표자료).
- 우리나라 가정위탁의 대부분이 대리2, 친인척 위탁인데 (우리나라 가정위탁현황(아동권리 보장원, 2020) 에 따르면 총 10,334명의 위탁가정 중 대리양육위탁이 6,865명으로 66.4%, 친인척 위탁이 2,566명으로 24.8%, 일반위탁이 903명으로 8.8%로 나타남) 대리위탁(조부모위탁)의 경우 위탁부모의 연령이 높고, 건강수준이 낮으며, 양육에 필요한 자원은 낮은 편임. 위탁아동과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 또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권지성·정익중, 2013).
- 또한 대리위탁이나 친인척 위탁부모와 위탁아동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친족위탁이 일반 위탁가정에 비해 양육환경이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됨 (Scannapieco & Hegar, 1999: 강향숙 외, 2021).
- 이렇듯 위탁가정의 특성에 따라 위탁아동 양육과정의 어려움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섬세하게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부모위탁은 가정위탁지원사업 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 2022)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리위탁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음

□ 위탁가정 ‘발굴’과 ‘지원’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위탁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보완으로 집중해 볼 수 있음

- 위탁가정 발굴의 문제는 가정위탁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위탁가정 양육 지원을 논의하는 본 주제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위탁가정 지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 위탁가정이 되는 사례를 보면 위탁아동 양육경험이 이전에 있는 경우 혹은 가까이에서 위탁가정을 간접경험하고 용기를 내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위탁가정 양육지원이 현재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제도의 활성화도 가능할 것임

□ 위탁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 중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서는 매우 유효하고 중요한 방법이며 세분화, 표준화, 법제화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위탁가정의 부모교육이 실제 자녀양육시 도움되는 정도를 확인한 결과 대체로 도움(58.8%), 매우 도움됨(34.7%)으로 나타남. 요컨대 부모교육이 도움된다는 응답으로 93.5%가 됨을 알 수 있고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함
- 위탁부모 진입시의 양성교육 부터 지속적인 양육지원을 위한 보수교육까지 교육체계의 마련과 교육 콘텐츠의 세분화, 표준화, 전문화가 매우 필요함.
- 위탁초기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관계설정, 상호소통과 이해 등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며 위탁아동 연령별(영아, 유아, 초등생, 중고생 등)로 유형을 차별화한 표준교육이 개발, 보급되어야 함.
- 미국의 사례를 보면 위탁부모의 유형에 따라 일반가정위탁의 경우 친가정 복귀에 목표를 두어 친부모에 대상 교육에 집중하는 한편 전문위탁의 경우 상대적으로 아동에 대한 심리, 정서, 행동, 의료적 개입 등을 위한 위탁부모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접근을 하기도 함(Baily, 2016)
- 참고로 현재 아동복지법상 위탁부모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유일한 법정 의무교육이었던 가정위탁상담원 교육도 100시간에서 최근 75시간으로 오히려 줄어든 상황임. 중앙차원의 표준교육은 전문가정위탁표준교육이 유일하고 나머지 교육은 지자체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가정위탁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는 물론 사회적 인식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을 통한 홍보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음. 자격검증 및 유지를 위한 교육과 별도로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해 가정위탁에 관심을 보이는 초기 진입자 들을 위한 교육을 마련하여 용기를 구체화,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수교육의 경우 교육형태가 집합교육 외에 상담, 영상물 활용, 슈퍼비전, 자조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실제 양육에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기준을 정해 교육시간으로 인정함). 특히 자조모임은 위탁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보교류가 활발하여 도움정도가 1순위로 나타나고 있음(배운진, 발표자료).

□ 위탁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보완되어야 함.

- 최근 정부에서도 가정위탁유형을 다양화하여 일반위탁, 전문위탁, 일시위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외국 가정위탁제도에 비하면 여전히 정교하지 못함. 가령 위탁부모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가정위탁(respite foster care-양육휴가제공 가정위탁) 형태가 절실히 필요함³⁾
- 가정위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마다 위탁가정 지원의 범위, 수준의 차이가 크고 매년 변동이 생겨 위탁부모가 양육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가정위탁에 대한 정보제공 및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데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인력지원과 인력의 역량강화가 매우 절실함(이것은 최근 시군구 중심의 아동보호체계구축에 따라 지자체 공공 인력이 중심이 될 것인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고민과 판단이 필요한 부분임)
- 위탁아동에 대한 친권공백 상태에서 위탁아동 권리가 침해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 크고 위탁부모의 행정대응에 대한 소진도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어 입법적 개선을 통해 위탁부모의 후견권 강화가 필요함.
-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성공적 가정위탁의 주요 조건으로 ①위탁부모에 대한 인정, ②끈끈한 자조모임을 통한 도움, ③양육비 지원으로 나타남(Barber & Delfabbro, 2004: 강향숙 외 2021).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위탁아동 양육에 대한 어려움의 인정이나 공감, 지지 등 비경제적 지원을 중요함을 시사함.
- 위탁아동이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의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물론(배운진, 발표자료) 친부모와의 삼각관계에서 긍정적 경험이나, 부정적 경험이나도 위탁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함. 따라서 가족관계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지원해줄 수 있는 상담서비스의 구축과 개발도 필요함.

본 연구와 논의가 위탁부모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3) 이 밖에도 다면적 치료위탁, 난민아동위탁, 청소년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위탁이 필요함

토론

위탁가정 양육 역량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토론문

정선욱(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배운진 연구위원님의 “위탁가정 양육실태 및 지원방안”에서 명시한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필요성에 100프로 동의합니다.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탁부모와 아동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비혈연 위탁부모 33명(수고 많으셨습니다.)을 면담한 결과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과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위탁아동 친부모 만남 시 지원방법을 보면, 주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주선해주는 경우 30.4%
- 직접 친권자에게 연락 23.9%
-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음 24.7%
- 위탁아동이 친권자에게 연락 7.3%
- 혈연/비혈연에 따라 친부모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나 만남시 지원방법이 차이가 있음
- 근황도 알고 연락도 하는 경우가 혈연 가정위탁이 비혈연에 비해 많음
- 비혈연의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주선
- 조부모나 친인척의 경우 직접 친권자에게 연락하는 비율이 높음

보호대상아동과 원가족과의 면접교섭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설문조사 시점 혹은 질문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추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면접교섭 제도가 도입 시행되었는데도 조부모, 친인척에서 직접 친권자에게 연락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조부모 친인척의 경우, 면접교섭의 정의나 방식은 비혈연 가정위탁과 달라야 하는지를 이후 살펴봐야겠습니다. 결론 및 제언 중, <가정위탁제도 내실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 내용 마련에서, 관련 내용이 추후 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위탁부모의 역할 인식에서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응답이 매우 낮았습니다.

- 위탁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호(1순위: 51.6%)
- 위탁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1순위: 32.5%)
- 위탁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1순위: 3.5%, 2순위: 7.9%) 낮음

아마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면접조사에서 나온 결과, “위탁 아동 원가족과의 관계가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양가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만나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동이 경험하는 충성심 갈등, 이로 인한 친부모 만남에 대한 아동의 소극적인(부정적인) 태도 또한 만나는 게 별 도움이 안된다는 위탁부모의 생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인식은 <위탁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에도 반영되어, 위탁부모 한 팀 만들기에 친부모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부모와의 관계는 원가정복귀 여부를 떠나, 아동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원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에 동참하는 역할, 원가정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강조가 이후 예비위탁부모 교육에서부터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가정은 공공아동보호체계에서 단기/일시적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호조치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장기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가정위탁이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위탁가정의 역할, 위탁부모의 역할은 달리 규정됩니다. 그러기에 향후 위탁부모의 역할은 아동보호체계 내의 가정위탁의 위상에 맞게 정의되고 교육, 전달, 안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위탁아동의 정체성 관련된 이슈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탁아동 양육시 어려움과 관련된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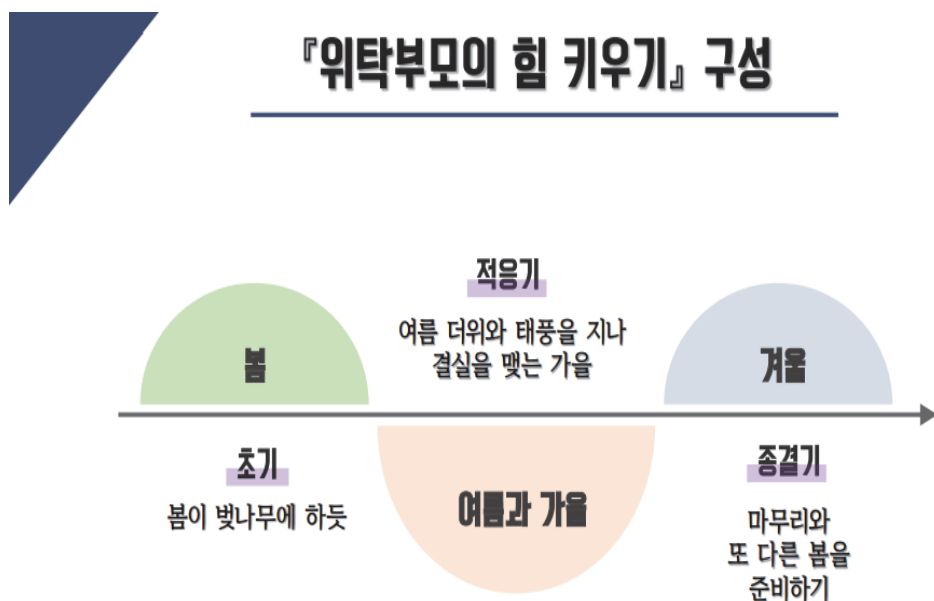
- 위탁아동과 가정위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
- 위탁아동과 친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움. 조부모가 다른 위탁부모에 비해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정체성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나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달리 조부모와 사는지, 친인척과 사는지, 아니면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궁금증에 대해 아동의 나이, 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친부모와 분리된 이유, 현재의 위탁보호 상황, 위탁보호 중의 아동의 권리, 친부모와의 관계, 위탁보호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위탁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에도 일부 반영되면 좋을 듯합니다.

자연스럽게 <위탁부모 힘 키우기 육아지침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우선, 위탁부모의 권리와 정체성,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지침서라는 차별성이 돋보입니다. 특히 위탁부모의 권리를 명시한 부분(위탁부모의 권리 찾기: 권리를 알고 자기 옹호하기, 위탁부모의 책임, 위탁부모 한 팀 만들기)은 다른 지침서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위탁부모로 성장하는 과정, 위탁을 시작하고 종결하는 과정을 봄 - 여름/가을 - 겨울로 묘사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시기마다 참고할 수 있는 동화책 등 자료를 배치한 것도 좋습니다.



위탁부모 맞춤형 육아지침서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친부모와의 면접교섭에서 위탁부모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친부모를 만나기 전, 그리고 친부모를 만나고 온 아이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다음 면접에는 무엇을 달리해야 하는지,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등이 담긴 위탁부모 맞춤형 면접교섭 안내서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동의 나이와 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위탁 보호 상황을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은지도 담기면 좋겠습니다.

육아지침서를 시작으로 위탁부모 맞춤형 안내서가 시리즈로 여러 편 개발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가정위탁 제도 내실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김아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위탁부모 정의규정 마련 및 자격 법제화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가정위탁에 관한 정의규정만 있을 뿐, 위탁부모 내지 위탁가정에 대한 정의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위탁가정의 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가정위탁과 일반·일시가정위탁 2가지로 구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독일의 경우 위탁부모는 아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독일 사회법전 제8권 제44조 제1항), 아동청은 허가를 위한 자격 심사를 위해 거주지를 방문하여 공간상황이나 위탁부모의 인적 적합성(예비지식, 경험, 아동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아동의 복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조사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가(독일 사회법전 제8권 제44조 제2항)한다.⁴⁾

가정위탁의 경우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고, 가정으로 아동을 보내게 되는 만큼, 위탁부모의 최소한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격 요건에 있어서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⁵⁾

이에 현행법상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가정위탁 및 위탁부모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 위탁부모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9항 이하에서 위탁부모에 대한 신원확인 및 범죄경력확인과 가정환경조사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해석상 위탁아동에 대해서만 가정환경조사를 하는 것인지가

4)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 비록 가정위탁 보호 책정 절차에서 아동 및 위탁가정의 가정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는 있으나, 법에서는 일반가정위탁의 경우 일정 소득기준과 범죄경력조회와 같은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면 자격이 주어지고, 위탁부모 중 1명만이 아동배치 이전 5시간의 교육 이수과 연 1회 5시간의 보수교육만을 받으면 되는 상황임.

5) 독일의 경우에도 위탁부모가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거나 3촌 이내의 친족, 입양전제위탁(시험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의 허가를 면함(독일 사회법전 제8권 제44조 제1항).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위탁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위탁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환경에 대한 조사를 명시하고, 해당 가정에 거주하는 모든 동거인에 대해서도 신원확인 및 범죄경력확인을 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1〉 위탁부모 정의규정 및 자격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 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정위탁”이란 위탁부모에게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분으로 한다. 가. 전문가정위탁: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나. 일반가정위탁: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다.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신 설〉	6의2. “위탁부모”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나.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다.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라.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가정위탁교육을 이수할 것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신 설〉	제100조(가정위탁 절차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해당 가정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신원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을 방문하여 위탁아동을 양육하기 적합한지 조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가정위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 가정위탁 아동 포함

현재 가정위탁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고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의 대상에는 입양아동만 있을 뿐, 가정위탁아동은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⁶⁾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해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 장기적으로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부모도 위탁아동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⁷⁾

〈표 2〉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육아휴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및 아동복지법 제0조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 내용 마련

현행 아동복지법은 신속한 원가정 복귀를 위해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아동의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 중인 아동은 친가정 조기 복귀 및 복귀 이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친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과의 사전 교감을 통한 결함의지 향상이 중요하므로 해당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UN아동권리협약 역시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3항). 또한 아동

6) 독일의 경우 위탁아동은 위탁부모가 가입한 공보험에 함께 가입되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고, 만약 따로 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이 보험료를 내고 있음.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비를 연 176유로(약24만원), 위탁부모를 위한 노후보험료 월 39.8유로(약5만3천원)와 상해보험비 연 176유로(약24만원)를 아동청이 부담하고 있으며, 위탁아동이 8세 이하인 경우 위탁부모는 3년간 부모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성지혜, [세계] 요보호 아동 복리를 위한 독일 가정위탁보호 제도 참조, <http://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92>(2022. 11. 30. 인출).

7) 이와 관련하여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566, 2021. 7. 19. 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동 법률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① 현재 대부분의 가족 지원제도는 법률혼과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한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② 현행 기준에 따르면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③ 보호대상아동의 위탁가정에 대해서까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고용 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주요 목적은 조속한 원가정 복귀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접교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친부모와 연락하고 있다는 비율은 30%에 불과하며(발표문 1, <표 11> 참조), 위탁아동이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있다는 비율도 23%에 달하여(발표문 1, <표 12> 참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아동의 면접교섭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4.7%에 달한다(발표문 1, <표 13> 참조).

실제 아동복지법상 면접교섭 지원 방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장과 위탁부모가 면접교섭 시 어떠한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법에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면접교섭을 무조건 진행하는 방향으로만 규정하기 보다는 학대피해나 여러 가지 위탁아동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위탁아동을 위한 면접교섭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시행이 요구된다.

〈표 3〉 면접교섭 지원방법 관련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11조의6(면접교섭 지원방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6(면접교섭 지원방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의 원 가정과 위탁아동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아동이나 위탁아동의 친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친부모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위탁아동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2. 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3. 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신 설>	

4. 위탁부모의 후견권 강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위탁부모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통장 등 금융계좌 개설(45.3%), 수술·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33.5%) 등의 순서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발표문 1, <표 17> 참조). 구체적으로는 당장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방과후 학습이나 돌봄교실 등에 내야 하는 건강보험증 발급이 어렵고, 휴대전화, 통장 개설은 물론 유사시 수술동의 같은 필수적인 동의조차 어렵다. 심지어 아이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친부모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어 위탁부모에게는 아무런 권한 없이 책임만 지운다는 비판이 있다.⁸⁾

이러한 논란에 따라 국회에서는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다.⁹⁾ 즉, 아동복지법에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다만, 동 법안의 경우에도 후견인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위의 권한 중에서도 해당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허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및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약칭: 시설미성년 후견법)등을 개정하여 가정위탁아동의 경우에도 위탁부모가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경우와 같이 임시후견인이 되어 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권한(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8) KBS 뉴스(2020. 11. 23). [취재취] '가정 위탁'의 한계...법적·제도적 보완 절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4673>(2022. 11. 30. 인출).

9) 국회 위생권 의원 대표발의(2022. 6.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 4〉 위탁부모의 후견인 권한 강화 관련 아동복지법 및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현행	개정안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②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②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보장원의 장 및 위탁부모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제2조(아동복지시설의 범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위탁가정

토론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강화 방안

남궁제정 회장(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협의회)

육아정책연구소의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 중 1차년도 연구과제로 2022년도 연구 대상을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위탁가정’으로 정하여 바쁜 일정 가운데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를 진행하여 결과와 제안의 내용이 정리된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시작된 강원도 시범사업의 성과로 2003년 전국적인 가정위탁제도 도입후 여러 정책의 변화가 있었으나 2020년 5월 「제17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선언한 ‘가정위탁 보호을 높이기 위해 6대 중점 추진 과제¹⁰⁾’의 단계적 시행이 잘 진행되어 2024년 가정위탁 보호율을 37% 수준 달성의 목표가 초과 달성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은 코로나-19로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을 정리하고 정상화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으며 가정위탁 사업의 현장에서 위탁가정 유형 변경, 자립준비청년 지원, 일시위탁 및 전문위탁 가정 사업의 도입 등 가정위탁지원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를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여년동안 너무나 많은 설문조사, 인터뷰 참여 등 가정위탁 정책과 사업의 긍정적 변화를 위하여 노력해 오셨던 ‘라운제나¹¹⁾’ 모임과 ‘해답이’¹²⁾ 모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라운제나’, ‘해답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다수의 의견은

“지난 시간동안 가정위탁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 및 정부 예산지원의 우선순위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였으며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은 오로지 위탁가정 및 위탁부모님들의 헌신과

10) 2024년을 종점으로 추진되고 있는 6대 중점과제는 ①예비위탁부모 발굴·홍보 강화 ②위탁가정의 지원 현실화 ③전문가 정위탁제도 본격 도입·위탁유형 다양화 ④후견인제도 활성화 ⑤원가정 조기복귀 지원 ⑥가정위탁 기반(인프라) 확대

11)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정위탁보호정책 개발 정책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탁아동 대표회의

12)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정위탁보호정책 개발 정책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정위탁부모 대표회의

사랑, 위탁 아동의 책임과 몫으로 미루어져 왔음을 기억 한다. 부족한 예산과 제도적 미비, 유관 기관의 협업 체계의 부족으로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아이의 성장과정 속에서 지방 자치단체, 병원, 교육청, 은행, 통신회사 등등 많은 난관을 스스로 극복해 왔으며 사례별, 사안별, 지역별 유사한 불통의 경험이 축적되어 왔지만 제도 개선은 더디기만 했다.” 였습니다.

위탁가정의 양육실태를 조사하고 지원하는 연구의 시작은 반갑고 환영할만한 일이나 지난 시간동안 크고 작은 연구와 조사의 경험이 실질적 사업 및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었다는 상실감도 상기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년)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 등 가정위탁아동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방법과 시기에 대한 사회적 필요 및 합의가 충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가정 복귀를 위한 친생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강화되지만 과거 경험을 돌아보면 지역별 또는 담당자별 결정의 편차가 적지 않았으며 관행적으로 친생부모와 만남이 기록되어 확인되면 가정위탁보호를 종결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었음으로 면접 교섭권의 강화는 원가정 복귀를 위한 과정과 수단으로 활용되고 종결 및 중지의 결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및 공무원 요원의 위탁 가정 및 위탁 아동에 대한 태도와 가정위탁제도의 이해와 수용성의 확대를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정 위탁 종결의 근거는 지금보다 더욱 섬세하고 여러 협력 기관의 공통된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할 수 있도록 시군구 지역적 편차 없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연구 조사에 참여한 위탁부모 및 함께하는 위탁 아동들의 기대와 염려 속에서 결과와 제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3가지로 분류된 결론과 제언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다만 1. 위탁가정 양육역량 강화 방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별 위탁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의 구체적 제언으로 위탁아동의 생애주기에 맞춘 연령별, 성별에 차별화된 양육 및 훈육 방법에 대한 부모 교육의 마련을 제안하고 있으나 전국 광역시도에 지역에 위치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현재도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지역별 가정위탁센터의 예산 및 인적자원의 규모가 매우 다르고 시,군,구 생활권이 각기 다른 위탁부모의 교육 접근성에 차이가 있으며 아동권리보장원 및 육아정책연구소 등의 중앙 기관에서 마련한 지침 및 교육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육 강사 수급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비대면 교육 운영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방안 마련이 병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조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가 긍정적 영향이 많이 있음에도 혈연관계의 가정 위탁 부모의 참여가 전무한 것은 당초 모임의 취지가 비혈연관계의 가정위탁 부모모임으로 시작 되었고 위탁부모유형에 따른 위탁 부모간 상대적 인식의 차이가 위탁부모 내부에 적지 않게 있어 함께 진행되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조모임은 각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되지 않음으로 상대적으로 고연령대의 혈연관계 위탁부모가 참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탁 유형별 자조모임 또는 위탁 유형별 부모모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 합니다.

2. 위탁가정 지원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육아지원 정책과 제도의 활용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에 찬성하며 연구 내용에서 언급된 것처럼 청소년 연령대의 위탁 아동에 대한 훈육의 어려움이 혈연, 비혈연 위탁유형에 차이 없이 모두 나타남으로 이와 관련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위탁가정 부모 대부분은 행정 실무자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토로하면서 위탁가정에 대한 서비스나 급여 처리의 비일관성이나 담당자의 부적절한 태도로 인한 행정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3. 가정위탁제도 내실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 개선 및 법제화의 필요성 제언에 감사드리며 공공후견인 제도 및 제한적 후견인 제도와 관련하여 전국가정위탁 지원센터 협의회 또한 많은 고민과 논의 중에 있으며 향후 후속 연구의 중요한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의 내용으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을 결론과 제언으로 정리해 주심에 감사 드리며 자립준비 청년 및 청소년 연령대의 위탁 아동 및 혈연관계 위탁가정 지원 정책과 제도 마련 또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준비된 많은 일들이 코로나-19의 상황속에서 다소 부진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2024년까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정상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MEMO

MEMO

2022년 제8차 KICCE 정책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 - 고민정 의원실 공동 주최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모색